

구분	내용	처리 기한	처리기관	법적 근거
	비용 지급	예방접종 비용 상환 인정 사실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제외	보건소	제10조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이의 신청	신청	비용상환 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료기관	제11조 (비용상환 이의신청)
	심사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	

* 법적 근거: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라) 거동 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의 예방접종 관리

관리 원칙

1. 거동 불편자: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촉탁의가 지정된 시설만 해당)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
2. 보건소는 거동 불편자가 생활하는 기관에서 요청 시 다음과 같이 접종 시행
 - ①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후 기관 내에서 자체 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
 - ②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 요양 중인 고령 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 또는 촉탁의에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권고
 - ③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가 의료기관 소속이면 소속기관에서 위탁계약 체결 후 해당 기관 의료진이 공급받은 백신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접종
 - ④ 사회복지시설 촉탁의가 개인 자격인 경우와 촉탁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가 접종 관리
 - * 개인 자격 촉탁의가 보건소 사업에 국가지원으로 협조할 경우 촉탁의를 통한 접종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건소가 관리하도록 함
 - ⑤ 사회복지시설 촉탁의는 가급적 관할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소속 의사로 권고

1) 거동 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 범위

- 거동 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촉탁의가 지정된 시설만 해당)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65세 이상인 자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정의
 -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30개 이상의 요양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제3조의2)

- 정신병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
- 사회복지사업 운영 기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중 촉탁의를 지정하여 운영 하는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6호)
 -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노숙인복지법」 제16조제1항제3호)
 -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지기관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노숙인복지법」 제16조제1항제4호)

2) 요양병원 및 사회복지시설별 사업 방식

구분	촉탁의 유무	촉탁의 소속	사업 방식
요양병원, 정신병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 위탁 계약 체결 후 위탁의료기관으로 사업 참여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있음	의료기관 소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사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부터 백신 배정 - 촉탁의가 주도하여 예진, 접종, 등록 실시 - 예방접종 시행비는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 상환 •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관할 보건소가 상이한 경우, 두 기관 간의 거라·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할 보건소가 접종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구분	촉탁의 유무	촉탁의 소속	사업 방식
사회 복지 시설	촉탁의 있음	개인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기관에 한하여 사회복지시설 관할 보건소가 접종 관리 ※ 촉탁의 협조가 있을 경우 촉탁의 예진/접종이 가능하나, 시행비 청구는 불가하고, 백신 제공과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가 담당
	촉탁의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기관에 한하여 보건소가 접종 관리*

* 보건소 접종 관리: ① 촉탁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 단기적으로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접종하도록 안내, ② 보건소가 보건소 백신으로 직접 접종, ③ ①의 촉탁의 계약이 없을 시, 보건소 관리 하에 인근 위탁의료기관이 방문하여 접종하고 시행비 상환

3) 예방접종 기록 전산 등록 및 비용상환

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바로 전산시스템에 등록
 - *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시설의 경우 실시한 접종력은 보건소 등을 통하여 당일 입력
- 예방접종 비용상환 방식은 일반 위탁의료기관 상환방식과 동일하며, 요양병원에서 시행한 예방접종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신청 시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비용 지급

나) 사회복지시설

- 촉탁의가 위탁의료기관 소속인 경우 일반 위탁의료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방접종 기록을 전산 등록 및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신청하며,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 지급
- 촉탁의가 개인 자격이거나, 촉탁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가 접종 관리 후 접종기록 전산 등록

4) 촉탁의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접종 의 백신 관리

-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 관할 보건소가 다를 경우, 백신 예상 수요량은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 관할 보건소 간 상호 협의하여 제출 및 배정
 - 단,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예상 수요량 제출 및 배정을 권고함

5) 촉탁의 예방접종의 기본원칙

-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

※ 안전한 접종 환경: 백신 콜드체인 유지, 접종 후 대기 장소 확보, 응급처치 세트 및 구급차 등의 안전 장비 구비

II | 사업 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